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1-31

서울 행정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0구단74842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

담당변호사 ○○○

피 고 ○○○○시 ○○구청장

변 론 종 결 2023. 4. 5.

판 결 선 고 2023. 10. 1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건물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[별지] 목록1, 목록3의 각 표의 제①항 기재 각 재산세 부과 처분 중 제③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[별지] 목록2, 목록4의 각 표의 제①항 기재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제③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
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○○ ○○구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건물과 토지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소유한 자이다.

유흥주점명	주소	영업장면적	소유자
B	○○ ○○구 C(지하1층)	61.8㎡	원고

나. 피고는 2020. 7.경 및 2020. 9.경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(2023. 3. 14. 법률 제 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0조 제1항,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,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[별지]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(이하 [별지] 목록3의 재산세 부과처분 및 목록4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3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 항변

이 사건 소 중 건물에 관한 2020년 7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관련 법리

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된다(행정소송법 제20조 제1



항, 제3항).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).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누3819 판결).

2) 구체적 판단

이 사건에 관하여 보전대,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2020. 7. 10. 원고의 주소지인 ○○ ○○구 D건물, E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산세(건축물)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. 7. 15.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. 10. 21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 중 건물에 관한 [별지] 목록1, 목록2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,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○○○○시장의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운영 제한조치로 인해 2020. 3. 21. 부터 2020. 6. 15.까지 사이에 약 65일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수익이나 가치의 증대가 없었으므로,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인 약 3개월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개월에 해당하는 1/4



비율에 의한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),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,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, 실제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, 유흥주점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고 하여도 같고(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922판결, 1992. 4. 28. 선고 91누11889 판결 등 참조), 사용금지를 명함으로써 건물의 사용·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갑 제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○○○○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. 3. 21.부터 2020. 4. 5.까지, 2020. 4. 8.부터 2020. 4. 19.까지, 2020. 5. 9.부터 2020. 6. 15.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



의 각 사정,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장이 2020년도 과세기준일인 2020. 6. 1.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,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, ② ○○○○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중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·수익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, 위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, ③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,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점, 즉 과세기준일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지만 재산보유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고(헌법재판소 2008. 9. 25. 선고 2006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), 더욱이 수익발생기간도 마찬가지인 점, ④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(대법원 2010. 11. 25.자 2010아48 결정 등 참조),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유흥주점의 영업중단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감면할만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건물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1-31

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○○○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1-31

[별지]

1. 목록1(2020년 7월 건물 재산세)

(단위 : 원)

① 재산세 고지세액	② 재산세 종과분	③ 재산세 종과분 3/4+일반세액	④ 감액금액 ①-③	비 고
1,646,180	1,185,420	889,065 +460,760 =1,349,825	<u>296,355</u>	B

2. 목록2(2020년 7월 건물 지방교육세)

(단위 : 원)

① 지방교육세 고지세액	② 지방교육세 종과분	③ 지방교육세 종과분 3/4+일반세액	④ 감액금액 ①-③	비 고
329,230	237,080	117,810 +92,150 =269,960	<u>59,270</u>	B

3. 목록3(2020년 9월 토지 재산세)

(단위 : 원)

① 재산세 고지세액	② 재산세 종과분	③ 재산세 종과분 3/4+일반세액	④ 감액금액 ①-③	비 고
92,149,400	41,110,190	30,832,643 +51,039,210 =81,871,853	<u>10,277,547</u>	B

4. 목록4(2020년 9월 토지 지방교육세)

(단위 : 원)

① 지방교육세 고지세액	② 지방교육세 종과분	③ 지방교육세 종과분 3/4+일반세액	④ 감액금액 ①-③	비 고
18,429,880	8,222,040	6,166,530 +10,207,840 =16,374,370	<u>2,055,510</u>	B



[별지]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07조(납세의무자)

-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 (각호 생략)

제110조(과세표준)

- ①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1.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
2. 주택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

제111조(세율)

-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1. 토지

다. 분리과세대상

- 2)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2. 건축물

가.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.

제114조(과세기준일)

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. 끝.